

의안번호	제 217 호
의 결 연 월 일	2011년 9월 일 (제303회)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발 의 자	정 현 의원의 6명
발의연월일	2011년 9월 9일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17
----------	-----

발의연월일 : 2011년 9월 9일

발의자 : 정현, 김도경, 노광기
김영주, 박문희, 김재종
이광희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2011. 7. 14.)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될 소지가 있는 방청제한 사유의 일부 내용을 정비하여 보다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발의의원과 찬성위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 성명 기재토록 하고, 의결된 조례안을 공포 또는 홍보하는 경우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20조제4항, 제5항)
- 입법예고 기간은 20일로 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일 이상으로 하여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
(안 제22조의2제1항, 제3항)
- 의회는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 변상 및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기관은 시정 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개정함.(안 제72조제3항)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의 소지가 있는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에 대한 방청제한 내용을 삭제함.
(안 제86조제1항제3호)

3. 일부개정규칙안 : 별첨

4.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별첨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규제관련사항 : 해당없음
- 입법예고여부 : 해당없음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신설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⑤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포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제22조의2제1항 및 제3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회에서 심사할 조례안 중 필요한 경우, 그 입법 취지나 주요내용, 전문 등을 입법예고 할 수 있다.
- ③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일 이상으로 하여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2조제3항 중 “변상 등”을 “변상 및 징계조치 등”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다음 회기까지”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로 한다.

제86조제1항 중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5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의안의 제출과 발의) ①~③(생략) <u>(신설)</u></p>	<p>제20조(의안의 제출과 발의) ①~③ (현행과 같음) <u>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u> <u>⑤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포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u></p>
<p>제22조의2(입법예고) <u>① 의원이나 위원회에서 발의한 의안 중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나 주요내용 등을 입법예고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u> <u>2.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u> <u>3.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u> 	<p>제22조의2(입법예고) <u>① 위원회에서 심사할 조례안 중 필요한 경우, 그 입법 취지나 주요내용, 전문 등을 입법예고 할 수 있다.</u></p>

현행	개정안
<p>4. <u>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u></p> <p>② (생략)</p> <p>③ <u>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u></p> <p>④ ~ ⑥(생략)</p> <p>제72조(결산의 심사)</p> <p>①~② (생략)</p> <p>③ <u>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도지사나 교육감 또는 해당기관에 <u>변상</u> 등 시정을 요구하고 도지사나 교육감 및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u>처리</u>하고, 그 결과를 다음 회기까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p> <p>④ (생략)</p> <p>제86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p> <p>1.~2. (생략)</p> <p>3. <u>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u></p> <p>4.~6.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일 이상으로 하여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u></p> <p>④ ~ ⑥(현행과 같음)</p> <p>제72조(결산의 심사)</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u>변상 및 징계 조치 등</u> ----- ----- -----<u>지체 없이 처리</u> <u>하여 그 결과를</u>-----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86조(방청의 제한) ①----- ----- -----.</p> <p>1.~2. (현행과 같음)</p> <p>(삭제)</p> <p><u>3.~5. (현행과 같음)</u></p>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제66조(의안의 발의)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⑤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포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제66조의2(조례안예고) ①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② 조례안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② ~ ③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안예고의 적용례)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의된 조례안부터 적용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 6. (생략)
- ② ~ ④ (생략)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